

#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, 약국에서 대면으로 환자 복약지도, 약제 조제·투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## 1 요양급여 대상

- (급여대상)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·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\*
  - \*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,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- (대상기관)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·투약하는 약국

##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

분류번호	코 드	분 류	점수(점)
코로나19	ZH002	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	63.91

## 3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

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는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면하여 약국에서 조제·투약하는 경우 1일 1회 산정함
- 약국 약제비(약1 약국관리료~약5 의약품관리료)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,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는 야간·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

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
- 다만, 차등수가는 2022.4.18.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함
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와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(ZH001)는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

#### 4 환자 본인부담률

- 환자 본인부담 면제 (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)

####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

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는 약국 처방·조제시 명세서 조제 투약내역의 “02항 01목”(조제료 등)에 기재
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 산정 시,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(기타내역)에 “코로나19대면”을 기재하여 청구

#### 6 적용일자

- 2022.4.4.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
- ※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.4.18.부터 가능

## 붙임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질의·답변

### Q1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가능한 요양기관은?

- 원외처방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·투약하는 약국  
※ 2022.4.18. 청구 시 2022.4.4. 진료 후 조제분부터는 소급 적용 예정

### Q2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?

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전액 보험자부담금(또는 의료급여기금)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

### Q3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?
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[별표4] 제1호 표의 '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'은 "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"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
※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없음

### Q4.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, "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" 수가 산정방법?

-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질환 관련 약제가 동시 처방되어(원외처방전 2매)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약국에서 조제·투약하는 경우, "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"는 1일 1회만 산정함

### Q5.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타질환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여 환자 본인이 약국에서 약제 수령 시, "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" 수가 산정방법?

- 타질환 관련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단독 발행시, 약국 약제비(약1 약국관리료 ~ 약5 의약품관리료)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를 산정할 수 있음. 다만,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(기타내역)에 "코로나19대면" 기재 필요

**Q6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,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?**

-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 청구 시,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(기타내역)에 “코로나19대면”으로 기재  
- 타 MX999(기타내역)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

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기재										청구유형
①	②	③	④	⑤	⑥	⑦	...	...	...	
코	로	나	1	9	대	면				올바른 기재
코	로	나	1	9		대	면			잘못된 기재
	코	로	나	1	9	대	면			잘못된 기재
코	로	나	대	면						잘못된 기재
대	면	투	약	관	리	료				잘못된 기재

**Q7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위해 확인사항은?**

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이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
-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(기타내역)에 “코로나19대면” 정확하게 기재 필요  
※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,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(질의응답 Q6. 참조)
- 또한,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2.4.18. 조제분부터 가능함

**Q8.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?**

-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약제를 환자 본인이 수령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 산정 가능함

**Q9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와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(ZH001)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?**

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와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(ZH001)은 동시 산정하지 않음
  -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를 산정(특정내역 MX999에 “코로나19대면” 기재)하고,
  -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(ZH001)를 산정(특정내역 MX999에 “코로나19확진” 기재)함

**Q10.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(ZH002) 산정 가능기간은?**

- 코로나19 확진 당일부터 격리 해제일 이내에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